<붙임>

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내역

(단위 : 백만원, %)

보고유형	신규		
대주주명 및 관계	메리츠캐피탈 (대주주의 지분율 : 100%) (메리츠금융지주의 특수관계사)		
신용공여의 주체 및 형태	주체: 메리츠종금증권 형태: 영 제38조 2항 3호 라목	신용공여개시일	2014. 02. 07.
		신용공여종료일	2014. 03. 19.
신용공여 약정금액	15,000	신용공여 법정한도	23,500
금리 (수수료)	2.76%	주요 특별약정	-
담보의 종류 (평가액)	없음	자금용도	-
신용공여 합계액 (잔액기준)	총 한도 15,000 (잔액: 15,000)	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	157,000 (기준일:2010. 3. 31)

기재상의 주의

1 신용공여액은 법 제34조제2항을 기준으로 작성

2. 신용공여의 형태는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형태를 작성

2. "비율"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

3. 신용공여합계액은 신용공여합계액을 한도기준으로 기재하고 (　)내는 잔액기준으로 기재

■ 첨부서류

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